

古文書 用語解說試案 (完)

金 光 永
서울大 文理大 圖書館

■ <註> 古文書는 그 의미가 대체로 文字로써 표현되어 있는 것이요, 동시에 이를 發給한 與者 아울러 이를 받을 對象인 受者, 즉 人格과 對象사이에 어떤 作用을 미치는 要件이 구비되어 있는 갑오경장 이전의 문서를 지칭한다. 古文書는 史學研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史料, 내지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價值가 높아 評價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고문서의 분포상황을 보면 대체로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 60,000枚, 국립중앙도서관에 13,000枚,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15,000枚,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10,000枚,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5,000枚, 장서각에 件記 1,000點이 수장되어 있다. 이러한 고문서의 충분한 연구가 수반되어 활용하여야 할은勿論이다.

그러나 귀중한史料로서의 古文書에 대한 整理가 아직도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 더우기 도서관에 있어서 古文書의 分類表, 내지는 記述目錄法에 관한 기준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 나라 도서관에 있어서 古文書의 整理, 말하자면 分類, 目錄을 위한 선행 과제로써 古文書의 用語에 대한 간략한 解說을 소개코자 하는 것이다. (完)

人

(璫源)單子：國內 宮家의 私文書로서, 王家 및 一族의 系譜에 올리기 위하여 申告하는 單子다.

宣諭：勅諭이다.

省記：國內 官文書로서, 王←臣 兵曹公文書인데, 兵曹의 入直 堂上官이 每日 初昏에 宮城을 宿衛하는 巡察人과 上番人の 姓名을 軍號와 함께 承政院을 經由하여 密封 上申하는 文書이다.

成文券：契約書를 만드는 것이다.

小錄：간단히 要點만 적은 종이 쪽지이다.

訴狀：1) 官廳에 對하여 하소연하는 서면이다.

2) 訴訟을 제기하기 爲하여 法院에 提出하는 文書이다.

所志：民對官 刑典 文書로서, 訴狀의 衷誠이다.

疏劄：上疏와 劄子이다.

贖良文記：1) 종을 끌어 주어서 良民이 되게 함. 賑身

2) 賑罪

3) 남의 患難을 대신하여 받음

頤德文：공여를 칭송하여 지은 글이다.

松楸文記：산소에 심는 나무의 종칭

에 대한 記錄이다.

手記：債用文券·借證·手標·標：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債用 證書이다.

手記：체험을 손수 적음.

手本：공사에 관하여 自筆로 上官에게 보내는 書類이다.

收稅：1) 稅錢을 거둠.

2) 租稅를 징수함.

手標：貸借, 寄託 등을 할 때에 주고 받는 증서이다.

承政院 啓辭：論題에 關한 文書이다.

試券(試紙)：國內 王←官←民, 私文書로서, 大·小·製述科의 試紙인데 副文書로 秘封이 있다. 應試準備 文書로 「照訖帖」과 號牌(符)가 있다. 四祖「單子」가 必要한 경우도 있고 「初試思賜帖」이 必要한 경우도 있다. 試券으로서 官印이 찍히지 아니한 것은 「白文」이라고 한다. 式年 文科 殿試에서는 미리 試紙에 「科學之寶」를 安하고, 試生에게 頒給한다.

柴場文記：땔 나무를 사고 파는 市場(柴場)에 관한 文書이다.

詩軸：詩를 적은 두루마리이다.

謚冊：國內 國王文書로서, 故王·妃←王 公文書인데, 升遐한 國王·妃에 尊號, 翁號를 올리는 玉冊이다.

謚號·贈謚(敎旨)：國內 國王文書로서, 王→民 文書·奉常寺 文書인데, 宗親·文武官 正二品以上인 者, 儒學으로 賢名이 있는 者, 節義에 죽은 者에게 (正二品이 아니더라도) 死後 謚號를 주는 文書이다. 奉常寺에서 主管하였다.

信任狀：과전국의 元首나, 外務長官이 接受國에 對하여 特定한 사법을 外交使節로 派遣하는 指令를 통고하는 公文書이다.

o

袁冊(文)：國內 國王文書로서, 國王이 升遐한 上王이나, 王妃에게 내리는 册寶文이다.

量案：논, 밭의 所在, 位置, 等級, 形狀, 面積, 血標, 所有主를 記錄한 册으로서, 田籍이라고도 한다.

魚驗·魚音(어음)：出次票로서, 國內 混公文書인데, 商人 社會에서 發行者가

金錢의 出給을 約束하는 手標證書이다. 出次票는 金錢 및 寄託物의 引渡證書이다.

歷辭記：守令이 起任하기 前에 各 官衙에 들아다니며 人事하던 일을 記錄한 것이다.

筵說：筵席에서 임금의 자문에 答하여 올리는 말이다.

廉探記：남모르게 사정을 살피 調查한 것이다.

禮物記：典禮와 文物에 對한 記錄이다.

玉冊：國內 國王 文書로서, 王妃를 冊封하는 文書인데, 尊牒·敎旨에 해당하는 文書이지만, 그 材料로서 玉冊이라 한다. → 謚冊.

玉冊文：帝王 後妣의 尊號를 올릴 때에 頌德文을 세진 箇책이다.

完文：國內 官文書로서, 混公文書인데, 이 完文은 民이 官의 立旨를 받는 경우와, 官이 一方의 으로 내리는 完文이 있으나, 상당히 廣範圍하게 發給되는 公文書이다. 個人, 또는 結社의 權利 義務에 관하여 發給되는 證明文書이다.

願文：佛家文書로서, 私對佛 文書인데, 부처에 祈請하는 文書이다. 이 文書가 檻에 쭉에서 寺刹이나, 佛經이나, 佛像들을 建造·印行·塑造할 때에 바치는 것이다.

遺詔·遺教：國內 國王 文書로서, 先王의 遺書, 現王이 升遐하면 遺教와 大寶를 王世子에게 傳하고, 뒤에 이를 「奉談堂」에 奉安한다. 또한 大臣에게 내리는 수도 있다. ← 願命.

諭書：國內 國王文書로서, 國王對官文書인데, 觀察使·節度使·防禦使 등이 起任할 때 내리는 命令書인데, 寶는

「諒書之寶」이다.

(遺書)成給文書：國內 官家文書로서，私對私 文書이고，遺書인데，分衿을 死 後에 할 境遇 이를 遺書라고 한다.

遺書：遺言하는 文書이다.

諭旨：임금이 臣下에게 내리는 글이다.

由狀反貼：國內 官對官 副文書로서，戶曹 文書인데，守令의 解由狀은 戸曹로부터 本道에 보내어 調査하도록 하 고 本道에서 調査가 끝난 결과를 添付하여 戶曹에 返回한다. 이것이 由狀反貼이다.

宥旨：國內 國王文書로서，王→民 文書인데，國慶이 있을 때 國王이 내리는 敕令이다. 대개，刑曹나，義禁府，觀察使들이 等級을 나누어 錄啓하여 差等을 두어 故令이 내려진다. ←頒赦文.

諭旨：임금이 臣下에게 내리는 글이다.

(六行)單子：國內 王→民 私文書로서 進士·生員，文武科 及第者가 贈賜하기 위하여 바치는 六行으로된 名印이다.

○(處女)單子：王→民 私文書로서，據擇令이 나왔을 때 土族의 處子의 이름을 써서 올리는 單子이다.

綸音：國內 國王文書로서，王→民 文書인데，國王이 臣民에게 내리는 諭諭의 文書이다. 「綸旨」·「綸綬」·「詔勅」이라고도 하고，「(勤農)綸音」「(斥邪)綸音」등 많은 綸音이 있다. 보통 單子로 成册해서 廣布하는 境遇가 많다.

議送：百姓이 고을 원에게敗訴를 당하고，다시 觀察使에 上訴하던 일이다.

移：國內 官公文書로서，官↔官 公文書이고，官 共通文書인데，官衙 사이에 照會하는 文書이다. 文書上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그 事由를 갖추어 當該官衙에 移文한다. 行移，移文，移牒등의 用語가 있다. ←關.

移文：官衙 사이에 照會하는 文書이다. 文書上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그 事由를 갖추어 當該官衙에 移文한다.

吏文：中國과 接受하면 物殊한 官用公文이다.

吏批：吏曹에서 奏請하여 允許를 얻은 벼슬이다.

人身賣買文記：사람을 팔고 사는 文記이다.

(立法)出依牒：法令의 施行파，判定에 관한 賜牒이다.

立案(旨)：國內 官副文書로서，官 共通文書인데，田地，家舍，牛馬，奴婢의 買賣， 및 訴訟에 대하여 官에서 發給하는 證明書이다.

立旨：地方行政官廳으로부터 發한 證明의 一種으로서，民의 請求에 관한 事實에 대해 發한 文書이다.

立議·完議：國內 淮公文書로서，決定書이다.

國文書이데，中國의 禮部에 올리는 文書이다. 「表」，「箋」，「物狀」을 합하여 谒文이라 한다. 종이에는 谒文紙를 사용하고， 谒文은 吏文으로 作成되는 表箋文의 通稱이고， 이 下部構造로서 위의 表·箋·物狀의 請表·謝恩表 등 많은 文書가 있고，國王 逝去를 알리는 谒文은 計告表·謹告終變·請鑑奏本이 있다.

慈旨：大王大妃의 傳旨인데，이 境遇 慈敎라고도 하고，臣下에게 내려지는 경우 한글을 使用하였다.

懿旨：王世孫의 傳旨이다.

爵帖：外命婦에게 주는 告身이다.

狀：唐六典에는 이를 六朝時代에 있어서 奏에 敦當하였지만，文心雕龍에는 「萬民達志 則有狀列辭諭」이라 하였다.

狀啓：國內 上奏 文書로서，王←臣 公文書인데，監司나，또는 王命으로 地方에 내려간 官員이 書面으로 報告하는 文書이다. ←草記.

掌記：物件이나，논밭 등의 賣買에 관한 物目을 적은 글입니다.

帳籍：戶籍이다.

摘奸成冊：不正이 없나，있나를 캐어 살펴 記錄한 冊이다.

傳敎：王의 命令이다.

典當文記：物品을 擔保로하여 돈을 꾸어 주고 받고한 文書이다.

傳令：國內 官 公文書로서，洞衙文書인데，守令이 赴任하기 前에 本邑 公兄에게 내리는 命令이다.

傳令狀：國內 結社 淮公文書로서，각 結社(負債·賤人)에서 有司가 結司員에게 命令을 傳하는 文書이다. ←通文.

箋文：外交文書로서，對中國 文書인데，中國의 皇太后，皇后，皇太子에게 賀禮하는 文書이다. 寶는 「大寶」를 사용한다.

傳旨：國內 國王文書로서，王→官 文書이고，承政院 文書인데，國政에 대하여 承政院을 通過하여 내리는 國王의 命令書이다. 그 條項은 「銀臺條例」刑放傳旨條에 明示되어 있다.

○直赴傳旨：各道의 都試 節目科 及第者는 바로 會試·殿試에 應試할 資格이 있다는 啓下 傳旨인데，이에 따라 直赴板帖文을 發給한다.

節目：國內 官文書로서，淮公文書인데，完文과 같은 性格이나，條件으로 表示된 文書이다. 말하자면 條目 한 개씩 記錄한 것이다.

(定名)單子：國內 國王文書로서，國王→王妃인데，王妃 冊禮에 이름을 定하는 單子이다.

題目：國內 官文書로서，官↔官 公文書인데，官吏의 賛貶을 四字二句로 된 文句로 記錄한 文書이다.

祭文：國內 神儒家文書로서，私對神文書인데，國王이나，個人이 自然人으로서，巫祝이나，儒家 告祀에 윤리는 글이다. 國王의 行祭文으로부터 官員·私家의 祭文에 이르기까지 多樣하다. 祀文이 規式的인데 比하여，祭文은 死者

의 一生을 略述하고，追慕의 情을 담은 것이다. 嶺南一帶에는 한글로 祭文을 차여 祀文을 읽은 뒤에 卑親女子가 읽고 이를 女系로 傳承하여 왔다.

題音·栲音(제김)·題辭：官對民 共通副文書로서，訴志의 餘白에 守令이 내리는 判決文인데，觀察使의 判決은 題辭라고 한다.

朝報：1) 承政院에서 처리한 일을 날마다 아침에 적어서 반포하는 일，또는 그 책은 종이로서，爛報라고도 한다.

2) 消息을 傳하여 通知함.

照覆：照會에 對한 會談이다.

詔書：國內 高麗·李朝末 國王文書로서，天子曰詔라 하여，皇帝의 教書이다. 高麗時代 中期와，大韓帝國의 教書를 詔書라 하였다.

條約文·條約(約章)：外交 文書로서，開港시기 및 韓日合邦을 전후해서 여러 條約，約章이 있고，또 外國과 사이에 오고간 外交 文書들이 있다.

(照律時 功議)單子：國內 私文書로서 照律할 때 功臣의 後裔들이 바치는 單子이다.

照會：移文을 지칭한다.

照訖帖：國內 淮公文書로서，1) 科學 보기전에 成均館에서 行하는 照訖講에 합격한 사람에 주면 證書이다. 이것이 있는 사람만이 科學을 볼 資格이 있었던 것이다.

2) 科學에 應試하는 儒生에게 成均館에서 그의 戶籍과 對照한 뒤에 小學을 背誦한 것을 照訖이라 하고，여기에 합격한 者에게 照訖帖을 出給한다.

3) 貨物 膜文에 대하여 照訖帖을 發給한다.

奏：文心雕龍에 「首唐虞之臣數奏以言秦漢之輔上書稱奏：秦始立奏，自漢以來，奏事或稱疏。奏事之末或云漢啓自昔來盛啓用典表奏」라고 하였고，그 내용은 天子에게 올리는 上奏文이나，우리나라에서는 一般的의 面에서 사용하였다.

竹冊：國內 國王文書로서，王→世子·嫡文書인데，世子·世子嫡의 冊封 文書이다.

中國箋文：吉凶의 일이 있을 때에 입금에게 아뢰던 四六體文이다.

證明：이는 帖文，標文本을 지칭한다.

呈辭(狀)：國內 私文書로서，(王←官，官↔官) 私文書인데，官員이 事頃로 舉리 암자에 辞職·休職·休暇 등을 願하여 올리는 單子(願書)이다. 다음과 같은 種類가 있다. 「辭職」，「覲親」，「掃墳」，「親病」，「焚黃」，「針灸」，「加土」，「婚嫁」，「沐浴」，「親祭」，「受由」等이다.

贈謚：二品以上의 實職者에게 死後에 贈號를 追贈하는 것을 贈謚라 한다.

贈職敎旨：從二品以上의 벼슬아치의 부친，祖父，曾祖父나，또는 忠臣孝子， 및 學行이 높은 사람에게 贈은 뒤에 官職과 品階를 추증함.

指令：이는 甘結을 지칭하고，지휘，

命令願書, 또는 품위에 대하여 내리는 官廳의 通知이다.

遲晚: 國內 民對官 私文書로서, 刑典私文書인데, 罪人의 自由, 및 自白書이다. 推緘하여 三度 抗拒한 다음에 職牒을收回하고, 다시 推考할 때 받는 自白書이다. 親鞫할 때는 國王이 對象이 되겠으나,一般的으로 다루어 刑曹文書에 속한다.

知音: 1) 音樂의 曲調를 절암.

2) 세와 짐승의 소리를 分간하여 알 아 들음.

陳告狀: 國내 私文書로서, 戶典文書인데, 田地를 3年以上 耕作하지 않고, 荒廢시킨 경우 他人이 官에 告하여 耕作權을 얻는 文書이다.

陳試狀: 國내 對官 私文書, 禮典文書로서, 初試에 及第하고, 會試·覆試에 合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事情이 있어 다음 會試에 應試할 수 없는 者는 陳試狀을 禮曹에 바쳐서 許可를 얻어 會試에 應試케 된다.

陳省: 國내 民對官文書로서, 禮典·兵典 文書이다.

1) 각 고을에서 上納하는 貢物의 明細書이다. 이 陳省에 따라 磨戶長·正朝戶長, 및 安逸戶長의 「職帖」을 授與한다.

2) 試驗을施行할 때에 應試者가 自己의 事情을 陳述하여 願書를 地方官에게 바치면 該官은 觀察使에게 申告하고, 觀察使는 그 書類를 粘付하여 禮曹에 移牒하는 것이다.

(進獻)單子: 國내 國王文書로서, 慈殿→王 私文書인데, 王의 慈殿 謹日에 올리는 單子이다. 實是「施命之寶」를 安한다.

天

次對筵說: 每月에 여섯 차례의 의정 연석에서 임금의 차문에 答하여 올리는 말이다.

劄子: 國내 上奏文書로서, 王→臣 文書인데, 國王에게 올리는 簡單한 形式의 上疏文을 「劄子」라고 한다.

「獨劄」: 單獨으로 하는 上奏을 말한다.

「聯劄」: 連名으로 하는 上奏를 말한다.

差帖: 國내 官·公文書로서, 官共通文書인데, 下吏를 任命하는辭令書이다. 禁府參下, 都事, 師傳, 教導, 教官, 監役, 別檢, 假引儀, 守直, 守奉, 守衛등의 任命狀이다. 下吏가 있는 것이 物色이다.

(參謁六行)單子: 官·私文書로서, 共通文書인데, 每年六月과 十二月에 官員의 成績을 考查하여 褒貶할 때에 各司의 官員이 그 首職에 面謁할 때 드리는 名牌이다. ←單子.

冊: 王이 臣에게 命令을 내리는 글이다.

尺文: (吏訏) 차문으로 읽는다. 稅를

받친 額收證이다.

薦望記: 國내 官文書로서, (王→官, 官←官) 公文書인데, 官員을叙任할 때에 文官은 更曹에서, 武官은 兵曹에서 三人의 候補者(三望)를 奏薦하면 國王은 그 奏薦된 者들 중에서 點을 찍어 (落點)任命할 者를 決定한다. 注擬, 備望, 三望, 擬望, 別名 ○ 計狀, 벼슬아치를 웃 자리로 친거하는 文書이다.

帖文: 國내 官, 公文書로서, 官共通文書인데, 權利行使, 및 物品供給의 證明書이고, 許可書이다.

牒: 文心雕龍의 書記 25에 「牒者葉也, 短簡編牒如在枝·溫舒截蒲其事也」라 하였는데, 六朝때 이미 이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唐六典에 下達上制第六을 「牒」이라고 하고, 九品以上의 公文을 云하였다.

牒報: 敵의 形便을 偵察하여 報告함.

牒(呈): 國내 官公文書로서, 官←官文書인데, 同等以上의 官衙(下達上)에 올리는 文書이다. 「牒呈」이라고도 한다.

牒呈: 下部官廳에서 上部官廳에 發給하는 公文이다.

青詞: 國내 道家文書로서, 私對文書인데, 道家의 祭文으로서 太乙祠나, 道觀등의 祭文이 있다.

請願書: 請願하는 内容을 적은 文書이다.

初檢文家: 初檢이라고도 하며, 犯獄에 對하여 첫 번으로 行하는 檢屍이다.

草記: 國내 官對官(國王) 文書로서, 京各衙門에서 政務上 重要한 일을 아뢰는 上奏文이다.

草料狀: 國내 官公文書로서, 兵曹文書인데, 軍官·宦官·家族을 率眷하지 않은 領將·平安道·博川以西와, 咸鏡道洪原以北의 守令, 및 그 家族과 童蒙敎官·西北歸鄉子弟와, 貢物押送人·濟州子弟와, 그 貢物押送人에게 주는 賦與證書이다.

招辭: 이는 供辭를 지칭하고, 罪人의 犯罪事實을 陳述하는 말이며, 供招이다.

草狀: 官員이 公務로 地方에 旅行할 때에 지나가는 길의 各驛站에 車馬, 食料등의 供給을 命令하는 文書이다.

2) 草料이다.

招牌: 國내 命官 公文書로서, 共通文書인데, 王으로 臣下를 招致할 때에 承政院에 招牌(符信)라는 木牌에 招致되는 사람의 姓名과, 官職을 記入하여 傳達한다. 招牌는 信牌이지만, 姓名·官職을 記入하면 文書가 된다. 諸科節日製에 大提學을 부를 때에 招牌를 사용한다.

推案: 國내 官文書로서, 刑曹文書인데, 犯人의 詞問書이다.

追贈(敎旨): 國내 國王文書로서, 國王→臣 文書인데, 高官, 또는 高官의 父母, 祖, 曾祖考에게 階·職을 死後에 내리는 文書이다.

推緘(上狀): 國내 官·公文書로서, 刑曹文書인데, 官吏로서 輕微한 罪로 囚

禁되지 않는 者에게 公緘으로 推問하여 (發)答(緘答)하는 文書이다. 이를 「公緘」이라 한다.

祝文: 私文書로서, 私對神文書인데, 儒家에서 神主(位)에게 告하는 글이다. 國家의 香祝文으로부터 個人의 忌祭祀의 祝文까지相當히 많으나, 끝나면 洗草·燒紙하고 만다. 李朝에서는 祝板으로 代行한 적도 있었다.

勅令: 이는 勅命을 지칭 한다.

勅命: 임금의 命令, 勅令, 勅旨이다.

勅語: 이는 教書를 지칭 한다.

勅諭: 임금의 宣諭, 勅教, 勅語이다.

(親祭)祭文: 國내 國王 文書로서, 國王이 大祀·中祀·小祀 등에 올리는 祭文으로, 大提學을 牌招製시킨다. 宮內 文書는 대개 符信을 使用하였다.

三

頤稟: 王→臣 公文書로서, 次對 때 出席치 못할 경우에 그 理由를 알리는 文書이다. 公의 경우를 「親事頤稟」이라고 하여, 各 官司마다 規定된 月 日이 定해져 있다.

土地文記: 田畠에 關한 文記이다.

通文: 國내 淮公·私文書, 結社·私對私文書로서, 通知하는 文書이다. 宗中通文·書院通文·儒生通文·負祿商通文·廣大有司 등 多人數에게 通知하는 文書이다. 徵文 등도 通文이라 할 수 있으며, 通文에는 通文別單(草)을 粘連하는 수도 있다. 通文은 初帖에 「通文」이라 쓰고, 再帖에 「右文爲通諭事于云」으로 쓰기 시작하고, 末帖에 年月日을 쓰고 署名 草押한다.

O사발 通文: 國내 淮公 私文書로서, 通文의 一種으로 逆賊謀議나, 下賤賊人社會에서 官命에 抗拒하는 謀議를 가진 때, 通文을 내려 首謀 與否, 및 着名 草押順序를 위해 기 위하여 通文·榜文餘白에 沙鉢을 놓고 圖形으로 着名한 通文이다.

通牒: 이는 關을 지칭한다.

四

派房記: 해마다 한 번씩 各地方官衙에서 六房의 下吏들을 交迭하면 일이 있다.

牌旨(비자)(明文): 1) 國내 私對私文書로서, 土地·家舍 賣買를 할 때에 그 地主가 文券으로 放賣의 확실한 意思를 밝힌 文書이다. 官의 立案을 받는 明文에는 牌旨를 連結해 둔다. 兩班의 경우 發給人은 奴婢名으로 代行한다. 이 牌旨는 牌子(비자)라고 하여 吏讀이다.

2) 宮家 私文書로서, 宮家の 土地 賣買文書로 牌旨가 있으나, 이는 私文書條 牌旨에 넣어서 考察하더라도 大過敍을 것이다.

表: 表자는 「下言上曰表」라 하여 王에게 바치는 文書이다.

表記: 表에 表示하여 記錄함.

表文: 外交文書로서, 對中國 文書인

